|  |  |  |
| --- | --- | --- |
| **국가외환관리국**  **《외국인투자자 경내 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 및 관련 문건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  회발 [2013] 21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과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 분국, 각 중국자본 외환지정은행:  외국투자자의 경내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투자자의 경내 직접투자 외환관리를 규율하기 위해 국가외환관리국은 《외국투자자 경내 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붙임 1 참조) 및 관련 문건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이 통지를 시행한 후 이 전의 규정이 이 통지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지에 준하며, 붙임 2에 열거한 법규는 즉각 폐지한다.  국가외환관리국 각 분국과 외환관리부는 이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관할 중심분국, 지국,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 농촌합작은행에 전달하여야 하며, 각 중국자본 은행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관할 각 분기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집행중의 문제는 지체 없이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하기 바란다.  붙임: 1. 외국투자자 경내 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  2. 폐지하는 경내 직접투자 외환관리법규 목록  3. 경내 직접투자업무 처리지침(생략)  국가외환관리국  2013년 5월 10일  붙임 1:  **외국투자자 경내 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외국투자자의 경내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투자자의 경내 직접투자 외환관리를 규율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지칭하는 외국투자자의 경내 직접투자(이하 경내 직접투자라 함)라 함은 외국투자자(경외 기구와 개인 포함)가 신규설립, 인수합병 등의 방식을 통해 경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프로젝트(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를 설립하고 소유권, 통제권, 경영관리권 등의 권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경내 직접투자는 등록관리를 실시한다. 경내 직접투자 활동과 관련되는 기구와 개인은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지기구(이하 외환국이라 함)에 등록하여야 한다. 은행은 외환국의 등록정보에 따라 경내 직접투자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 외환국은 경내 직접투자 등록, 계좌개설 및 변경, 자금수불 및 환결제와 환매도 등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등록, 계좌 및 환결제와 환매도 관리**  **제5조**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준비에 필요한 초기 준비비용 등의 자금을 송금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외환국에서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6조**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후에는 외환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통화자금, 주주권, 현물자산, 무형자산 등(경내 합법적 소득 포함)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를 하거나 또는 경내기업 중국측의 주주권 인수에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자의 출자 및 권익상황에 대하여 외환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후속 증자, 자본감소, 주주권양도 등의 자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환국에 등록변경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말소를 하거나 비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외환국에 말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경내 기구와 개인이 경내 직접투자와 관련한 주주권 양도, 경내 재투자 등의 기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외환국에서 등록 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경내 직접투자 관련 주체는 등록수속을 처리한 후 실제 수요에 따라 은행에서 초기 비용계좌, 자본금계좌 및 자산 현금화계좌 등의 경내 직접투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경내 직접투자 계좌 내의 자금을 사용 완료 후 은행은 계좌 개설주체의 계좌 말소처리를 할 수 있다.  **제9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환결제와 사용은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외환자본금 및 그 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 자금은 기업 경영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진실하고 자사사용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초기 비용계좌 등의 기타 경내 직접투자 계좌 자금의 환결제는 자본금 환결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자본감소, 청산, 투자 선행회수, 이익배당 등의 필요로 인해 경외에로 자금을 송금하여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상응하는 등록 수속을 처리한 후 은행에서 환구매 및 대외지불 수속을 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가 소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권 양도로 인해 경외에 자금 송금이 필요한 경우 경내 주주권 양수측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상응하는 등록수속을 처리한 후 은행에서 환구매 및 대외지불 수속을 할 수 있다.  **제11조** 외환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연차검사를 실시한다.  **제3장 감독관리**  **제12조** 은행은 경내 직접투자 관련 주체에 계좌개설, 자급입금, 환결제 및 환매도, 경내이체 및 대외지불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그가 이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서 상응하는 등록수속을 처리하였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은행은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경내 직접투자 관련 주체가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 일치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외환국 지정업무시스템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은행은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경내 직접투자 관련 주체에 상응하는 계좌를 개설해 주며, 아울러 규정에 따라 계좌 개설과 변경, 자금수불 및 환결제와 환매도 등의 정보를 적시에 완벽하고 정확하게 외환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경내 직접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집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외환국은 등록, 은행송부, 연차검사 및 표본검사 등의 방식으로 경내 직접투자와 관련한 다국적 수지, 환결제 및 환매도, 그리고 외국투자자의 권익변동 등의 상황에 대한 집계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15조** 외환국은 은행에서 처리한 경내 직접투자업무의 적격성 및 관련 정보 송부상황을 심사 검사하며, 경내 직접투자 중에 존재하는 이상하거나 수상한 상황이 존재하는 기구나 개인에 대하여 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다.  심사에는 비현장심사와 현장심사가 포함된다. 현장심사 방식에는 심사대상 주체에 관련 서면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심사대상 주체 법정대표자, 책임자 또는 그 위임인과 면담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심사대상 주체 관련 자료를 열람, 복제하는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관련 주체는 외환국의 감독검사에 협조하고 상황을 여실하게 설명하고 관련 문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 저애하거나 속이지 못한다.  **제16조** 경내 직접투자 관련 주체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제4장 부 칙**  **제17조** 외국투자자가 신설,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경내에서 금융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 투자자의 경내 직접투자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한다.  **제19조** 국가외환관리국은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책임지며, 아울러 이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한다.  **제20조** 이 규정은 2013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전의 규정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에 준한다.  붙임 2:  **경내 직접투자 외환관리 법규 폐지목록**  1. 《외국인투자기업 외환등기관리 잠정방법》 하달에 대한 통지([96]匯資函字第187호)  2. 경외기업의 경내 공사도급 외환관리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회답([98]匯資函字第204호)  3.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양도, 청산 외환업무를 분국에 위임하는 것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匯發[1999] 397호)  4. 외국인투자자 인민폐 재투자 외환 관련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회답(匯復[2000]129호)  5. 외국인투자 자본금 외환결제 관리방식 개혁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匯發[2002]59호)  6. 경내 거주민의 외환구매 외국투자자의 지분양수대금 지불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비준회답(匯復[2002]231호)  7. 외국인투자기업 외환연차검사업무 개선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匯發[2004]7호)  8.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계정 외환결제 및 외채등기 관리업무 개선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匯發[2004]42호)  9. 수출가공구, 보세구 및 상해보석거래소의 외국인직접투자 자금사정 조회 및 외자 외환등기 업무 전개와 관련한 통지(匯發[2004]108호)  10. 보험중개기구의 외환 자본금계좌 개설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통지(匯綜發[2006]6호)  11. 제1회 상무부 비안(備案)에 통과된 외국인투자 부동사프로젝트 항목 발부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통지(匯綜發[2007]130호)  12. 상무부 비안(備案)에 통과된 외국인투자 부동산프로젝트 항목 인터넷 공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통지(匯綜發[2007]138호)  13. 경외 자연인의 경내 상품주택 구매 외환자금 결제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비준회답((匯綜發[2007]86호)  14. 직접투자 외환업무정보시스템의 전국 인터넷연결 보급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匯發[2008]16호)  15. 직접투자 외환업무정보시스템과 외환계좌시스템 간의 업무처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통지((匯綜發[2008]129호)  16. 외국인투자자 입찰 토지사용권 전용 외환보증금계좌, 외국인투자자 재산권거래 전용 외환보증금계좌 심사허가 권한 하부이양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통지((匯綜發[2008]130호)  17.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의 자본금 외환결제 경내 지분투자 진행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비준회답((匯綜發[2008]125호)  18. 외국인투자부동산기업 외환등기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통지((匯綜發[2009]42호)  19. 외국 주주의 다국적 지분교환 업무처리와 관련되는 지분양도 외환수입의 외자 외환등기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비준회답((匯綜發[2010]5호)  20. 《경내 거주민의 경외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융자 및 유턴투자 외환관리 업무처리규칙》 인쇄발부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匯發[2011]19호)  21. "3來 1補" 기업 가치 불평가 설비의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자의 출자와 관련한 자금사정 조회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비준회답((匯綜發[2011]155호)  22. 외국인투자 파트너십기업 외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匯發[2012]58호)  23. 외국인투자자가 외환 전용계좌 내의 외환자금을 결제하여 해상합작 오일가스전 폐기비용을 납부하는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통지(匯綜發[2012]126호)  24. 東軟그룹주식유한공사 외국주주의 지분감소 외환등기 변경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비준회답(匯綜發[2012]34호) |  | **国家外汇管理局**  **关于印发《外国投资者境内直接投资外汇**  **管理规定》及配套文件的通知**  汇发[2013]21号  国家外汇管理局各省、自治区、直辖市分局、外汇管理部，深圳、大连、青岛、厦门、宁波市分局；各中资外汇指定银行：  为促进和便利外国投资者境内直接投资，规范外国投资者境内直接投资外汇管理，国家外汇管理局制定了《外国投资者境内直接投资外汇管理规定》（见附件1）及配套文件。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本通知实施后，之前规定与本通知内容不一致的，以本通知为准，附件2所列法规即行废止。  国家外汇管理局各分局、外汇管理部接到本通知后，应及时转发辖内中心支局、支局、城市商业银行、农村商业银行、外资银行、农村合作银行；各中资银行接到通知后，应及时转发所辖各分支机构。执行中如遇问题，请及时向国家外汇管理局反馈。  附件：1.外国投资者境内直接投资外汇管理规定  2.废止境内直接投资外汇管理法规目录  3.境内直接投资业务操作指引（略）  国家外汇管理局  2013年5月10日  附件1：  **外国投资者境内直接投资外汇管理规定**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促进和便利外国投资者境内直接投资，规范外国投资者境内直接投资外汇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等相关法律法规，制定本规定。  **第二条** 本规定所称外国投资者境内直接投资（以下简称境内直接投资），是指外国投资者（包括境外机构和个人）通过新设、并购等方式在境内设立外商投资企业或项目（以下简称外商投资企业），并取得所有权、控制权、经营管理权等权益的行为。  **第三条** 境内直接投资实行登记管理。境内直接投资活动所涉机构与个人应在国家外汇管理局及其分支机构（以下简称外汇局）办理登记。银行应依据外汇局登记信息办理境内直接投资相关业务。  **第四条** 外汇局对境内直接投资登记、账户开立与变动、资金收付及结售汇等实施监督管理。  **第二章　登记、账户及结售汇管理**  **第五条** 外国投资者为筹建外商投资企业需汇入前期费用等相关资金的，应在外汇局办理登记。  **第六条** 外商投资企业依法设立后，应在外汇局办理登记。外国投资者以货币资金、股权、实物资产、无形资产等（含境内合法所得）向外商投资企业出资，或者收购境内企业中方股权支付对价，外商投资企业应就外国投资者出资及权益情况在外汇局办理登记。  外商投资企业后续发生增资、减资、股权转让等资本变动事项的，应在外汇局办理登记变更。外商投资企业注销或转为非外商投资企业的，应在外汇局办理登记注销。  **第七条** 境内外机构及个人需办理境内直接投资所涉的股权转让、境内再投资等其他相关业务的，应在外汇局办理登记。  **第八条** 境内直接投资所涉主体办理登记后，可根据实际需要到银行开立前期费用账户、资本金账户及资产变现账户等境内直接投资账户。  境内直接投资账户内资金使用完毕后，银行可为开户主体办理关户。  **第九条** 外商投资企业资本金结汇及使用应符合外汇管理相关规定。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及其结汇所得人民币资金，应在企业经营范围内使用，并符合真实自用原则。  前期费用账户等其他境内直接投资账户资金结汇参照资本金结汇有关规定办理。  **第十条** 因减资、清算、先行回收投资、利润分配等需向境外汇出资金的，外商投资企业在办理相应登记后，可在银行办理购汇及对外支付。  因受让外国投资者所持外商投资企业股权需向境外汇出资金的，境内股权受让方在外商投资企业办理相应登记后，可在银行办理购汇及对外支付。  **第十一条** 外汇局根据国家相关规定对外商投资企业实行年检。  **第三章　监督管理**  **第十二条** 银行为境内直接投资所涉主体办理账户开立、资金入账、结售汇、境内划转以及对外支付等业务前，应确认其已按本规定在外汇局办理相应登记。  银行应按外汇管理规定对境内直接投资所涉主体提交的材料进行真实性、一致性审核，并通过外汇局指定业务系统办理相关业务。  银行应按外汇管理规定为境内直接投资所涉主体开立相应账户，并将账户开立与变动、资金收付及结售汇等信息按规定及时、完整、准确地向外汇局报送。  **第十三条** 境内直接投资应按照有关规定办理国际收支统计申报。  **第十四条** 外汇局通过登记、银行报送、年检及抽样调查等方式对境内直接投资所涉跨境收支、结售汇以及外国投资者权益变动等情况进行统计监测。  **第十五条** 外汇局对银行办理境内直接投资业务的合规性及相关信息的报送情况实施核查或检查；对境内直接投资中存在异常或可疑情况的机构或个人实施核查或检查。  核查包括非现场核查和现场核查。现场核查的方式包括但不限于：要求被核查主体提交相关书面材料；约见被核查主体法定代表人、负责人或其授权人；现场查阅、复制被核查主体相关资料等。  相关主体应当配合外汇局的监督检查，如实说明情况，提供有关文件、资料，不得拒绝、阻碍和隐瞒。  **第十六条** 境内直接投资所涉主体违反本规定的，外汇局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及相关规定进行处罚。  **第四章　附 则**  **第十七条** 外国投资者通过新设、并购等方式在境内设立金融机构的，参照本规定办理登记。  **第十八条**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的投资者境内直接投资参照本规定管理。  **第十九条** 国家外汇管理局负责本规定的解释，并依据本规定制定操作指引。  **第二十条** 本规定自2013年5月13日起实施。此前规定与本规定不一致的，以本规定为准。  附件2：  **废止境内直接投资外汇管理法规目录**  1、关于下发《外商投资企业外汇登记管理暂行办法》的通知（[96]汇资函字第187号）  2、关于境外企业承包境内工程外汇管理若干问题的复函（[98]汇资函字第204号）  3、国家外汇管理局关于授权分局办理外商投资企业转股、清算外汇业务的通知（汇发[1999]397号）  4、国家外汇管理局关于外商以人民币再投资外汇管理有关问题的复函（汇复[2000]129号）  5、国家外汇管理局关于改革外商投资项下资本金结汇管理方式的通知（汇发[2002]59号）  6、国家外汇管理关于境内居民购汇支付外国投资者股权转让款的批复（汇复[2002]231号）  7、国家外汇管理局关于改进外商投资企业外汇年检工作有关事项的通知（汇发[2004]7号）  8、国家外汇管理局关于改进外商投资企业资本项目结汇审核与外债登记管理工作的通知（汇发[2004]42号）  9、关于在出口加工区、保税区和上海钻石交易所开展外商直接投资验资询证及外资外汇登记工作的通知（汇发[2004]108号）  10、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保险中介机构开立外汇资本金账户有关问题的通知（汇综发[2006]6号）  11、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下发第一批通过商务部备案的外商投资房地产项目名单的通知（汇综发[2007]130号）  12、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实行网上公布通过商务部备案的外商投资房地产项目名单的通知（汇综发[2007]138号）  13、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境外自然人购买境内商品房外汇资金结汇有关问题的批复（汇综复[2007]86号）  14、国家外汇管理局关于直接投资外汇业务信息系统全国推广上线有关问题的通知（汇发[2008]16号）  15、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直接投资外汇业务信息系统与外汇账户系统操作有关问题的通知（汇综发[2008]129号）  16、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下放外国投资者竞标土地使用权专用外汇保证金账户、外国投资者产权交易专用外汇保证金账户审批权限的通知（汇综发[2008]130号）  17、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外商投资创业投资企业资本金结汇进行境内股权投资有关问题的批复（汇综复[2008]125号）  18、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外商投资房地产企业外汇登记有关问题的通知（汇综发[2009]42号）  19、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外方股东办理跨境换股涉及的转股收汇外资外汇登记有关问题的批复（汇综复[2010]5号）  20、国家外汇管理局关于印发《境内居民通过境外特殊目的公司融资及返程投资外汇管理操作规程》的通知（汇发[2011]19号）  21、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三来一补”企业不作价设备转作外商投资企业外国投资者出资所涉验资询证有关问题的批复（汇综复[2011]155号）  22、国家外汇管理局关于外商投资合伙企业外汇管理有关问题的通知（汇发[2012]58号）  23、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外国投资者外汇专用账户内资金结汇缴纳海上合作油气田弃置费有关问题的通知（汇综发[2012]126号）  24、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东软集团股份有限公司外资股东减持股份所涉外汇登记变更有关问题的批复（汇综复[2012]34号） |